



Vol. 4

2023.04.14.

Customs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04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장민전임 mjjang@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사례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국외반출 신고서 사본 제출 허용 (제10조제1항제1호)	거주자 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내국물품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을 대신하여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제10조제1항4호)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를 대신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명확화 (제10조7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산정 시 대체공휴일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3) 시행일

'23.03.20.

II. 입안예고

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입안계획

(1) 입안 이유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향료 및 정제·가공용 원료에 대해서 계획된 수입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원료)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신청절차 마련 (안 제7조의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중 향료 및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원료에 대해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 이력이 있고,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 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를 마련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 건 처리방법 명문화 (안 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자진취하(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방법을 명문화

II. 입안예고

구분	내용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 명칭 변경 및 품목 조정 [안 [별표1]]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으로 판매가 불가하거나 명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혼동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2-56호, 2022.8.1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알로에(노회)를 삭제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 항목 69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13종으로 조정 [안 [별표3]]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45종을 추가하고, 69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1종을 제외함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안 [별표 4]]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 및 브로콜리, 브라질산 커피원두, 필리핀산 망고, 미얀마산 동부, 이탈리아산 및 미국산 볶은 커피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3) 의견수렴기간

'23.05.01

III. 조세심판사례

1.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AAA(주)의 국제무역선인 000(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는 항해 중 원드拉斯 및 체인로커가 파손되고 닻과 닻체인이 유실됨에 따라 수리 등을 위해 국내로 입항하였다. 선용품 공급업체인 청구법인은 2022.2.5. 000 소재 BBB 사로부터 AAA(주)에 공급하기 위한 닻과 닻체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CCC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2.17. DDD 를 통해 쟁점물품의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고, 2022.2.21.부터 2022.2.23.까지 3 일간에 걸쳐 000 소재 조선소 EEE(주) 안벽에서 쟁점선박에 쟁점물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2.21. EEE(주)에 출장하여 쟁점물품이 쟁점선박에 단순 적재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 자체에 부착되어 선박수리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선박용품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적재허가 내용대로 적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선박의 수리가공에 사용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 239 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 39 조에 따라 2022.3.2.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 원, 부가가치세 000 원 및 가산세 000 원 합계 000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III. 조세심판사례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의 설치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단순 적재한 것이 아니라
쟁점선박에 부착 · 가공하여 선박수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 결정일

2023.01.31. (조심 2022 관 0102)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1. 관세청,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

관세청은 3월 2일 판교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거점(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①반도체 수출지원을 위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②수출기업 지원과 무역 및 물류분야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 · 활용 확대, ③출입국 · 해외직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관세서비스 혁신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관련업계 · 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혁신 테스크 포스(TF)(단장: 관세청 차장)」을 통해 이번 방안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추진방향>

목표	수출촉진 + 민간 혁신 비즈니스 창출 + 국민편의 제고
전략	규제 혁신, 무역데이터 개방, 기관 간 협업, 디지털 혁신
3대분야 8개 추진과제	<p><u>1. 수출촉진을 위한 규제혁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 (민간) 수출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 - (공공) 수출지원기관 · 정부부처와 무역데이터 공유 <p><u>2. 혁신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이피아이(API) 방식 개방 확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p><u>3.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규제혁신</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모바일 관세 납부 · 환급 시스템 구축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 육성
추진체계	민관 합동 규제혁신 테스크 포스(T/F) +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6일(월)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이 주요내용이다.

<2023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구 분	대 상
수출지원	- 수출우수기업
	-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
정책지원	-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 일자리창출, 유지기업, 일자리으뜸기업
	- '22년 신설 기업, 벤처기업 육성 인증기업
	- 관세청 · 국세청 모범납세자
위기극복 지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류대란, 긴급재난 피해기업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율 3%이상 기업
	- 산업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지원내용의 경우 1)관세조사의 유예 2)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3)분할납부 담보생략 4)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3 관세청 세정지원 주요내용>

분야	원 칙	지 원
관세조사 유예	- 정기 관세조사 수행	- 관세조사 유예(1년)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허용	- 신고수리일~15일이내 관세납부	-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 최대 1년범위 내 분납 허용
담보제공 생략	- 수입신고 시 납세담보 제공	- 납기연장(분납)업체 담보 생략
환급금 신속 지급	- 환급신청 시 심사 후 환급처리	- 당일 지급(선지급 후심사)

납부기한 연장, 수출 환급금 지급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 신청 절차 등은 관할 세관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식약처, 수입 원료 신속통관 지원 및 통관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 원료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사제조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 대상자와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가공용 식품 원료)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 절차 마련 ②선박으로 수입되는 대용량 농산물의 수입 검사 절차 개정 ③수입 농산물의 최초 정밀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④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식약처장이 안전성을 인정한 식품 대상 조정 등이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선박 농산물 수입신고·검사 사례>

